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73호

공사 입찰 안내 공고

❖ 본 공사는 건설사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공사는 전문공사이며, 입찰자격을 만족하는 종합건설업자의 투찰이 가능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나. 공 사 명 : 황령산 숲길 정비사업(2차)

다. 위 치 : 문현동 산18-6번지 일원(황령산 임도, 편백숲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공사개요 : 김소월 시비 24개소 설치, 초화(꽃무릇, 수선화, 수국 등) 식재 등

바.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90,663,000	847,910,000	770,827,273	77,082,727	42,753,000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389,487,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경쟁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공종별 공사내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G2B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2026.10.06. 09:00
입찰 마감일시	2026.10.08. 10:00
개찰일시	2026.10.08. 11:00
재입찰개찰	2026.10.08. 16:00
개찰장소	남구 재무담당관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남구청 공원녹지과(☎ 051-607-4782)

6.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조경공사업 보유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제출은 낙찰

예정 1순위 업체에 한하여 개찰 직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제출

>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별표2 참고

※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발주부서【공원녹지과(☎ 051-607-4782)】로 문의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742,705,108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별도 요청기한까지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본 공고 건의 A 값은 29,409,048원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5,642,456	7,455,262	741,418	11,959,996	3,609,916	0	0	29,409,048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료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5,642,456	7,455,262	741,418	11,959,996	3,609,916	0	0	29,409,048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공고문에 명시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으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 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재무담당관(☎051-607-4142), 감사담당관(☎051-607-4055) 및 홈페이지(www.bsnamgu.go.kr→민원상담)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1) 공사에 관한 사항 : 남구청 공원녹지과(☎ 051-607-4782)

2) 입찰에 관한 사항 : 남구청 재무담당관(☎ 051-607-4142)

3) 전자입찰이용방법(장애처리) : Call Center(☎ 1588-0800)

4)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산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관 귀하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본 계약 건이 타절 정산될 경우 타절 정산 기성에서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노무비는 제외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